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7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- 가. 주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감소하여 봉투수입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,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는 음식물납부필중도 추가 지급됨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,
- 나. 기타 조례상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쓰레기봉투의 판매소 표지 부착 설치 의무 완화 (안 제11조제3항)
- 나. 주민 1인당 기본배출량을 월 60ℓ에서 월 30ℓ로 조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납부필중 무상 지급에 따른 무상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반영하고자 함 (안 제16조)
- 다.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 (안 제22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, 「행정규제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 제27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입법예고(2005. 6. 8 ~ 2005. 6. 28)기간중 의견제출사항 없음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중 “부착하여야 한다”를 “부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6조 본문중 “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”을 “기본배출량을 감안하여”로 하고, “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로 하되, 제1호 해당자는 월 40리터로 한다”를 “그 기준은 1인당 월 30리터로 하되,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월 20리터로 한다.”로 하며, 동조제1호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중 “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”를 “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”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(제11조제4항관련)

1. 판매소공급가격 :  $l$  당 처리비용 $\times$ 봉투용량( $l$ ) $\times$ 주민부담율(목표치)+ 봉투제작비
2. 판매수수료 :  $[(l \text{ 당 처리비용} \times \text{봉투용량}(l) \times \text{주민부담율} + \text{봉투제작비}) \times \text{판매수수료 효율}] \div [(1 - \text{판매수수료 효율}(9\%))]$
3. 판매가격 : 판매소공급가격+판매수수료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및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<b>부착하여야 한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④ 내지 ⑥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<b>부착할 수 있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④ 내지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6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로 하되, 제1호 해당자는 월 40리터로 한다.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</li> <li>2.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</li> <li>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	<p><b>제16조(수수료의 감면) ----- 기본배출량을 감안하여-----</b>                      -----  <b>그 기준은 1인당 월 30리터로 하되,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월 20리터로 한다.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-----</li> <li>2. -----</li> <li>3. -----</li> </ol>
<p><b>제22조(과태료부과·징수절차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<b>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④ ~ ⑥ (생략)</p>	<p><b>제22조(과태료부과·징수절차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<b>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-----</b>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# □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변경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판매소 공급가격	(쓰레기수집운반비+처리비)×부산광역시목표자립도+봉투제작비	ℓ 당 처리비용×봉투용량(ℓ)× 주민부담율(목표치)+봉투제작비	목표자립도를 주민부담율로 대체
판매수수료	(쓰레기수집운반비+처리비) ×부산광역시목표자립도× 판매이익율(9%)	[(ℓ 당 처리비용×봉투용량(ℓ) ×주민부담율+봉투제작비)× 판매수수료율] ÷ [(1-판매 수수료 율(9%)]	목표자립도를 주민부담율로 대체, 산식일부변경
판매가격	판매소 공급가격+판매이익	판매소 공급가격+판매수수료	용어변경: 판매이익▶ 판매수수료